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 관련 대회원 안내



배경

- 최근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의료계 전체가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음. 또한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가 명백한 비위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행함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언론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의료계 스스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율규제 및 징계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사실상 행정처분에 의존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행정당국의 전문성 부재로 인하여 신속하지 못한 형식적인 징계에 그치고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계가 실효성을 갖춘 면허관리 권한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음. 이에 협회는 의료인 단체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2016.11.21.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옴.

사업목적 및 효과

- 의사 및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및 의료윤리 위반에 대한 민원을 의료인 단체가 직접 처리함으로써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전문가적 판단이 가능.
-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빚기 전에 의료계 내부에서 먼저 인지하고 해결함으로써 환자를 보호하여 국민건강을 도모함과 동시에 비윤리적 소수에 의한 의료계 전체의 이미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의료계 스스로가 전문성에 기반하여 공정하면서도 엄격한 자율적 규제를 수행함으로써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각종 의료현안과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주장에도 정당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함.
- 시범사업이 각 시도의사회를 거점으로 추진되므로 시도의사회가 지역 의료의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사무장 병원과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일삼는 회원을 규제하여 지역의 회원들을 보호하고 소속감과 유대를 강화하는 등 지역의사회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사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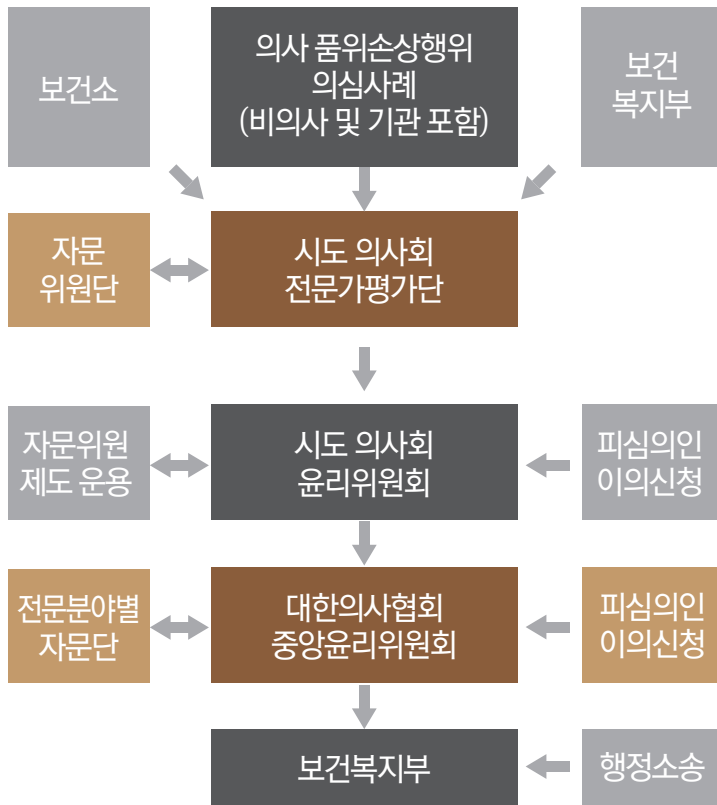
제1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 기간: 2016.11. ~ 2018.10.
- 대상지역(3개소): 경기도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 운영결과 - 총 16건 - 조치 내용: 혐의없음 1건, 자체종결 9건, 주의 1건, 보건소 시정조치 요청 1건,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1건, 민원진행 중단 1건, 대법원 판결 후 종결 1건, 진행 중 1건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 기간: 2019. 05. ~ 본 사업 추진 전까지
- 대상지역(3개소): 경기도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 대상지역(8개소): 서울특별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업무진행 과정



- 면허신고시 발견(보건복지부)
- 시도 의사회 및 보건소 등 민원 모니터링
- 전문가평가단 조사 실시
- 필요시 복지부, 보건소 공동조사
- 조사결과 시도 의사회 윤리위 보고
- 보건소 등에서 직접 조치, 고발(※ 형사고발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비의료인에 대해서만 고발조치)
- 행정처분 필요여부 심의
- 피심의인 청문
-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뢰(주의 or 행정처분)
- 회원권리정지 등 자체징계 가능
- 피심의인 청문(행정처분 의뢰시 필요적 청문)
- 행정처분 필요여부 결정
- 행정처분 수준 결정
- 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 중앙윤리위원회 요청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평가단 운영

- (설치단위) 광역시도단위로 전문가평가단 설치
- (조사시기) 민원 발생후 1달이내 조사 시작
- (민원제기 방법) 전문가평가제 시행 시도 의사회 비치된 민원양식 작성과 증거자료 제출.
민원인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됨
- (민원접수처) 시범사업 지역(8곳)은 사건발생 지역 의사회로 접수, 기타지역은 의협으로 직접 문의 및 의뢰
 - (서울특별시 의사회) 02-2676-9751
 - (광주광역시 의사회) 062-529-2101
 - (대구광역시 의사회) 053-953-0033
 - (대전광역시 의사회) 042-252-9917
 - (부산광역시 의사회) 051-464-5571
 - (울산광역시 의사회) 052-243-2047
 - (인천광역시 의사회) 032-425-8767
 - (전라북도 의사회) 063-284-5070
 - (대한의사협회) 02-6350-6542

평가 대상

- 의사 또는 의료기관
- 비의사 및 기관(사무장병원·불법의료생 협, 의료광고 등의 의료법 위반행위 기관)

전문가평가제 민원 대상

의료법상 의사면허 결격사유

- 중대한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인 자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
- 비도덕적 진료행위
- 각종 법령을 위반하는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환자유인행위

-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 예) 골수검사, 피부 및 조직절개, 봉합 등
-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
-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 예) 환자에 대한 평가 없이 시행하는 처방 및 처치

사무장병원·불법의료생협 등 의료법 위반행위(환자유인행위)

- 사무장병원 등 비의사 및 기관에 대한 처분
 - 전문가평가단에서 조사 후
 - (의사) 시도윤리위원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 처분 의뢰
 - (비의사 및 기관) 고발 조치 후 보건소 등에서 직접 조치 또는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조사 및 처분 의뢰
 - ※ 형사고발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비의료인에 대해서만 고발조치
- 지역 보건소와 평가단 공동조사 시 현장에서 바로 조사의뢰 가능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윤리적 진료행위 및 행위

- 일회용 주사용품 재사용 ● 진단서, 처방전, 증명서 등 부정 발급
- 의사회원간의 폭력행위(전공의 폭행) ● 의료기관의 명칭 및 의료광고금지규정 위반 등

기타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상기 내용 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평가결과 조치

원칙

- **전문가평가단 조사 및 시도지부윤리위 제소** → **시도지부윤리위원회 의결(자체징계, 보건소 의뢰, 형사고발 등)**
- 자체 징계는 의협 정관, 중앙윤리위원회, 시도지부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절차 진행.
- 보건소 제보는 조사에 비협조시에 진행하며, 시범사업 실시 광역시도의사회 자체 진행. 단, 형사고발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비의료인에 대해서만 고발조치 함.

평가결과 조치의 종류

- 혐의 없음
- 시도의사회 윤리위 자체징계, 주의 조치. 사무장병원의 경우 보건소 의뢰, 비의료인은 형사고발
- 행정처분 :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복지부로 의뢰, 복지부는 의협 중앙윤리위 의견 존중하여 행정처분 시행

세부적용

- 의료윤리 위배 사안에 대한 조치
 -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 매우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의”조치가 필요한 사항일 경우 시도지부윤리위원회 제소, 혐의가 없을 경우 전문가평가단 자체 종결 가능
- 의사 면허결격사유 발견 시에 대한 조치
 - 시도지부윤리위원회 및 중앙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통보
 - 단, 보건소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의사의 면허결격사유 발견시에는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로 직접 제보 조치
- 비의사 및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조치
 - (비의사) 비의사 및 기관을 해당지역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제보, 조치 요청
 - (의사) 전문가평가단 및 시도지부윤리위원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 행정처분 의뢰

향후계획

시범사업 운영 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전국단위의 본 사업 추진 예정

